
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배포일시	2021.7.28.(수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정책과		
담당과장	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	담당자	송상현 사무관(044-203-5362)		
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(RPS)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

- ▶ 해상풍력 가중치 상향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기대
- ▶ 공급의무화 제도(RPS) 의무비율 상향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 예정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」(이하, RPS 고시)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- 동 개정안은 7월 6일 “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”와 행정예고(6.30~7.20),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(7.1~7.16)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.
- 한편,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,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, 철강·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하였다.

* 해상풍력 기본가중치(現→改) 2.0 → 2.5, 수심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+0.4

- 또한,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·제공하여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, 금융 조달을 원활히 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.

* 다만,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(사업계획서와 동일설치시 변동 無)

- 한편,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·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‘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’ 가중치를 신설하였다.

*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: 각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가중치에서 0.2를 차감

○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·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* 수준을 유지하였다.

*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: 小(100kW 미만) 1.5, 中(100kW~3MW) 1.5, 大(3MW~) 1.0

- 수상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였다.

* 수상 태양광 가중치(現→改): 小 1.5 → 1.6, 中 1.5 → 1.4, 大 1.5 → 1.2

- 자연경관 훼손,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향조정(現 0.7 → 改 0.5)하였다.

○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(수열)의 가중치는 제외하였다.

* 석탄IGCC(0.25→0), 온배수열(수열) (1.5→0)

○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,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.

* 미이용산림바이오(전소 2.0, 혼소 1.5) 현행유지, 기타바이오에너지(1.0) 현행유지 등

○ **연료전지**는 **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** 도입시까지 **과도기적으로**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**가중치를 일부 하향**하였다.

- *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(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) 도입시 연료전지 가중치 제외 예정
- * 연료전지 : 소폭 하향(2.0→1.9), 부생수소 활용(+0.1), 에너지효율 65% 이상(+0.2)

□ 산업부는 금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**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**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.

① 우선 **신재생 보급목표, REC 수급상황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된 신재생법*에 따라 **연도별 RPS 의무비율**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, **'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**이다.

*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%에서 25%로 확대한 「신재생법」 시행예정('21.10.21)

② 한편, 신재생사업자의 **가격안정성**을 위해 변동성이 큰 **현물시장**의 비중을 **점진적으로 축소**하고, **장기고정계약 물량**을 **하반기에도 지속 확대**해 나갈 계획이다.

* 장기고정계약 물량 : '18년 600MW → '19년 850MW → '20년 2.6GW
→ '21년상 2.05GW, '21년하 2GW 이상 추진


③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**RE100 참여기업**이 **REC 구매**를 통해 **재생 에너지 사용**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**8월중으로 마련**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.

④ 또한, **커피찌꺼기, 버섯폐배지** 등의 **유기성 폐자원**의 **에너지 자원화**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**관련규정**을 정비하고 **시범 사업**을 추진하여 **별도 가중치 신설**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금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의 **안정적 사업추진**을 위해 **가중치가 하향**되거나 **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**를 받을 수 있도록 **경과조치 규정**을 설정하였다.

< REC 가중치 관련 경과조치 >

대상 에너지원	경과조치 규정
▶ 태양광(수상형(중규모 및 대규모), 임야) ▶ 조력(방조제 無)	고시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(‘21.10.28) “발전 사업허가” 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
▶ 연료전지	고시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(‘22.1.28) “공사 계획인가(또는 공사계획승인)” 를 받은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
▶ 수열(온배수열)	고시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(‘23.7.28) “RPS 설비 확인” 을 신청한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송상현 사무관(☎ 044-203-53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	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대분류	소분류		현행	개정 후	비고	
태양광	일반부지	소규모(100kW 미만)	1.2	1.2		
		중규모(100kW~3MW)	1.0	1.0		
		대규모(3MW 초과)	0.7	0.8		
	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활용	소규모(100kW 미만)	1.5	1.5		
		중규모(100kW~3MW)				
		대규모(3MW 초과)	1.0	1.0		
	수상태양광	소규모(100kW 미만)	1.5	1.6	유예기간 설정	
중규모(100kW~3MW)		1.4		유예기간 설정		
대규모(3MW 초과)		1.2		유예기간 설정		
임야			0.7	0.5	유예기간 설정	
자가용			1.0	1.0		
풍력	육상		1.0	1.2		
	해상(법률상 바다 및 바닷가 중 수심이 존재)		2.0	2.5		
	연안해상(해상풍력 중 간석지 또는 방조제 내측)		-	2.0	신설	
	수심 5m, 연계거리 5km 증가시 마다 (수심20m 초과, 연계거리 5km 초과인 해상풍력 및 연안해상풍력에 적용)			+0.4(복합)		
연료전지	연료전지		2.0	1.9	유예기간 설정	
	부생수소 사용시		-	+0.1	신설	
	에너지효율 65% 이상시(전기+열효율)		-	+0.2	신설	
바이오 에너지	목재펠릿/목재칩 전소		0.5	0.5		
	목재펠릿/목재칩 혼소		-	-		
	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전소		2.0	2.0		
	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		1.5	1.5		
	Bio-SRF 전소		0.25	0.25		
	기타 바이오에너지 (가축분뇨 고체연료, 하수슬러지 고형화 연료, 바이오중유)		1.0	1.0		
	매립지가스		0.5	0.5		
	바이오가스		1.0	1.0		
흑액		0.25	0.25			
폐기물 에너지	폐기물에너지 전소 (생활폐기물 등 재생가능폐기물)		0.25	0.25		
해양 에너지	조력 (방조제 무)	고정형	2.0	1.75	유예기간 설정	
		변동형	1.0~2.5	1.0~2.5		
	조력 (방조제 유)			1.0	1.0	
조류				2.0	2.0	
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			-	-0.2	신설	
수력			1.0	1.5		
지열			1.0~2.5	1.0~2.5		
수열(온배수열)			1.5	0	유예기간 설정	
석탄 IGCC			0.25	0		